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4차 여성가족위원회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제외 〉
■ 김도읍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02914호)

2024. 11.

여 성 가 족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총괄 검토	2
2. 개별 검토	9
가. 유사 입법례	9
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4
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
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5
마.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소 등에 관한 법률」	31
바.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35
사.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9
아.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46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도읍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4. 8. 16.
3. 회 부 일 : 2024. 8.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각종 자격의 취득, 영업의 등록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피한정후견인을 배제하고 있음.

이는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력의 획일적 · 포괄적 배제에서 개별적 · 한정적 제한으로 전환하려는 성년후견 제도 취지와 모순되고 직무 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을 삭제함으로써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Ⅲ. 검토의견

1. 총괄 검토

종래 「민법」¹⁾은 의사능력이 부족한 성년자를 위한 보호제도로써 금치산자·한정치산자제도를 규정하고 있었음. 그런데 ‘금치산’, ‘한정치산’ 등 부정적 용어를 사용하고, 본인의 의사와 장애의 정도에 대한 섬세한 고려 없이 행위능력을 획일적으로 제한하여 사회적 편견을 일으키는 한편, 보호의 대상을 재산적 법률행위로 제한함으로써 복리에 관한 다양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없는 등의 문제가 있었음.

또한,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의사나 복리, 후견인의 의지나 능력, 친소관계 등을 고려함 없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일률적으로 결정되어 법정후견인에게 적절한 후견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음.

이에 2011. 3. 7. 「민법」을 개정하여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를 현재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은 물론 미래에 정신적 능력이 약해질 상황에 대비하여 후견제도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주체적으로 재산관리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신상에 관한 폭넓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성년후견제도로 확대·개편하여 2013. 7. 1.부터 시행하고 있음.

즉 성년후견제도는 금치산자·한정치산자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하여 보호를 요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대응할 수

1) 2011. 3. 7. 법률 제10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있도록 개선하며,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기 위한 것으로, 단순히 피성
 년후견인의 행위능력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의 제한된 행위
 능력을 성년후견인의 지원을 통하여 보완해 줌으로써 노령,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하거나 결여된 사
 람을 보호하고 존중하여 그의 잔존능력을 활용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음²⁾.

＜ 금치산·한정치산제도와 성년후견제 비교 ＞

성년후견제 도입 전	성년후견제 도입 후
금치산자	피성년후견인
(대상)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 (행위능력)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는 언제나 취소 가능	(대상)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 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행위능력) 원칙적 취소 가능(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는 행위를 정한 경우 등은 예외)
한정치산자	피한정후견인
(대상) 심신박약 또는 재산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 (행위능력) 한정치산자의 모든 법률행위에 후견인 동의 필요	(대상)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 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 (행위능력) 가정법원이 별도로 정한 행위만 후견인 동의 필요

한편, 개정 「민법」은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자를 인용한 법률의
 개정 지연에 따라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법 시행

2) 헌법재판소 2019.12.27. 선고, 2018헌바130

후 5년간(2018년 7월 1일까지 법령 정비를 위한 유예기간 부여) 기존 법률에서 금치산·한정치산자를 인용한 경우 성년후견·한정후견을 인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과조치³⁾를 두었고, 이에 따라 이후 진행된 개별 법률의 정비과정에서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으로 용어만 대체하는 경향이 있었음.

그러나, 피한정후견인⁴⁾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서 본인·배우자 등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으로,

가정법원⁵⁾이 예외적으로 법정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정한 범위에

3) 「민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0429호, 2011. 3. 7.)

부칙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② 제1항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개시되거나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 또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는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을 인용한 경우에는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5년의 기간에 한정하여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4) 「민법」 제12조(한정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한정후견개시의 경우에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5) 「민법」

제13조(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①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③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그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④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서 행위능력이 제한될 뿐 원칙적으로 모든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모든 행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종전 한정치산자와는 성격이 다름.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검증 없이 피한정후견이라는 이유만으로 일괄적으로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① 피후견인 행위능력의 “획일적·포괄적 배제”를 “개별적·한정적 제한”으로 전환하려는 성년후견제의 취지에 반하고, ② 후견선고라는 사실 자체에서 직무부적격이 당연히 증명되는 것이 아님에도 이를 의제하여 기계적으로 결격사유를 적용⁶⁾하는 것은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

또한, 2021년 제정된 「행정기본법」 제16조제2항⁷⁾은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기준으로 ① 규정의 필요성이 분명할 것, ② 필요한 항목만 최소한으로 규정할 것, ③ 대상이 되는 자격, 신분, 영업 또는 사업 등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을 것, ④ 유사한 다른 제도와 균형을 이룰 것을

6) 박준모, “피후견인 결격조항 폐지의 필요성과 입법과제”,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분석 제93호, 2019.12.27., p.3

가정법원의 심판대상은 후견이 필요로 한 것으로 주장되는 사람이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사무처리능력이 결여되었는지(피성년후견인), 부족한 것인지(피한정후견인) 여부일 뿐, 가정법원은 후견개시 선고를 함에 있어 결격조항을 가진 약 450개의 법령에서 규정하는 자격 조건이나 인허가 사유, 임직원으로서의 적격성 등에 대해서는 심리하지 않음.

7) 「행정기본법」

제16조(결격사유) ① 자격이나 신분 등을 취득 또는 부여할 수 없거나 인가, 허가, 지정, 승인, 영업등록, 신고 수리 등(이하 “인허가”라 한다)을 필요로 하는 영업 또는 사업 등을 할 수 없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결격사유”라 한다)는 법률로 정한다.

② 결격사유를 규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규정의 필요성이 분명할 것

2. 필요한 항목만 최소한으로 규정할 것

3. 대상이 되는 자격, 신분, 영업 또는 사업 등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을 것

4. 유사한 다른 제도와 균형을 이룰 것

규정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등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7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 등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 후견인’을 제외하려는 것으로,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장하고, 성년후견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결격사유에 관해서는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뿐 아니라 공공 복리에 미치는 영향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의 성격상 고도의 전문적·기술적 지식이나 상당한 주의의무가 수반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개별 법률을 대상으로 ① 자격시험이나 자격기준, 허가·등록·신고 등의 요건, 그 밖의 검증수단 등을 통해 직무수행능력을 판단할 절차의 반영 여부, ② 정신적 제약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 자격을 정지·취소하거나 해임·해촉 등의 사후적인 규제수단의 규정 여부, ③ 직역의 특수성 및 공익과의 밀접성 ④ 유사 직역의 입법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정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참고로, 법제처의 「법령입안심사기준」(2023.12.)에 따르면 민법상 행위능력과 개별법상 직무수행능력을 구분하여 결격사유를 규정할 필요가 있고, 구체적으로 이미 규정되어 있는 자격시험, 인허가 요건, 그

밖의 검증수단을 통해 직무수행능력 판단이 충분히 가능한 경우에는
 피후견인 결격사유를 두지 않는 것이 타당하고, 개별법에서 검증수단
 이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자격이나 업종의 특성 및
 공익성의 요구 정도 등을 고려하여 피후견인 결격사유를 규정하지 않
 고 대체 결격사유로 ‘정신적 제약’ 등⁸⁾을 추가로 규정할 수 있다는 입
 장임.⁹⁾

국회 법제실의 「법제기준과 실제」¹⁰⁾에서도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

8)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평가대행
자로 등록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3. 심신상실자, 알코올 중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신적 제약이 있는 자

4. ~ 6. (생략)

제17조(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① 소방청장은 평가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16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2. ~ 10. (생략)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7조의2(문화예술교육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교육 관련 학력 또는 경력을 갖추
 고 문화예술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발급일을 기준으로 제2항 각 호
 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하고, 자격을 부여받은 사
 람에게는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검정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문화예술교육사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 4. (생략)

③ 문화예술교육사는 문화예술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27조의3(자격취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7조의2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을 취득
 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3. 정신적 제약으로 문화예술교육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3년간 문화예술교육사
 의 자격을 받을 수 없다.

9) 법제처는 이 경우에도 공익성이 중대한 경우라면 결격사유와 행정처분을 동시에 규정함으로써
 사전·사후 규제가 되도록 하고, 공익성 관련성이 낮은 경우에는 행정처분만 규정하여 사후 규
 제수단만 두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10) 국회 법제실, 「법제이론과 실제」, 2024. 5, p.370

력을 원칙적으로 긍정하고 있는 성년후견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피한정
후견인은 가급적 결격사유에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임.

2. 개별 검토

가. 유사 입법례

개정안과 유사한 자격과 관련 입법례를 살펴보면, 피한정후견인 관련 결격사유를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음.

「사회복지사업법」 11)에 따른 사회복지사, 「노인복지법」 12)에 따른

11)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발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자격증 발급 신청일 기준으로 제11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등급은 1급·2급으로 하되, 정신건강·의료·학교 영역에 대해서는 영역별로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료사회복지사·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은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부여하고,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료사회복지사·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은 1급 사회복지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부여한다.

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2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4.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요양보호사의 직무·자격증의 교부 등) ②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39조의3에 따라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기관(이하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제39조의13(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4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6. 제39조의14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취소(이 조 제3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요양보호사, 「장애인복지법」¹³⁾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¹⁴⁾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등은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제외하고 있는 반면,

「영유아보육법」¹⁵⁾에 따른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보육교사 등 어

13)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 교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직업재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73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이하 “장애인재활상담사”라 한다)에게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제73조(국가시험의 실시 등) ①의지·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및 장애인재활상담사(이하 “의지·보조기 기사등”이라 한다)의 국가시험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되, 실시시기·실시방법·시험과목, 그 밖에 시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4조(응시자격 제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73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07. 10. 17., 2011. 8. 4., 2017. 2. 8., 2017. 9. 19., 2017. 12. 19., 2024. 10. 22.>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가가 의지·보조기 기사등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

4. 5. (생략)

1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이하 “정신건강전문요원”이라 한다)은 그 전문분야에 따라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및 정신건강작업치료사로 구분한다. <개정 2020. 4. 7.>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8. 12. 11., 2020. 4. 7., 2024. 10. 22.>

1. 피성년후견인

2. 이 법이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가. ~ 거. (생략)

2의2. 이 법이나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4. 제3호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15) 「영유아보육법」

제21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② 보육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린이집 종사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16)에 따른 장애인 활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1의2. 법령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2.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훈련 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③ 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등급은 1·2·3급으로 하고, 등급별 자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지정 및 지정 취소, 교육과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 ~ 9. (생략)

제2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다.

1.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21조의2(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16)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활동지원인력”이란 활동지원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에 대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9조(활동지원인력의 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없다. <개정 2012. 12. 18., 2015. 12. 29., 2017. 12. 19., 2024. 10. 22.>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활동지원인력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4. ~ 7. (생략)

제27조(활동지원사) ①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활동보조급여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인력(이하 “활동지원사”라 한다)이 되려는 사람은 제28조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사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8. 12. 11.>

-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사의 교육과정, 교육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활동지원인력의 범위 등) 법 제26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종류별 활동지원인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활동보조를 수행하는 활동지원인력: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사
2.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문목욕을 수행하는 활동지원인력: 「노인복지법」 제39조의2

동지원 인력 등은 결격사유에 피한정후견인을 존치하고 있음.¹⁷⁾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제외한 사회복지사 및 장애인재활상담사는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자격이 부여되고 있으며, 요양보호사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자격이 부여되고 있음.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경우도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등으로 구분하고 있어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 등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므로 국가시험 합격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임.

결격사유에 피한정후견인을 존치하고 있는 보육교사는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또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등을 자격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별도의 자격시험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에 따른 요양보호사 중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3.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문간호를 수행하는 활동지원인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간호사로서 2년 이상 간호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로서 3년 이상 간호보조 업무 경력이 있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

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치과위생사

제20조(활동지원사의 자격)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자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말한다.

1.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2.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3. 「의료법」 제2조에 따른 간호사

4.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17) 참고로, 보육교사와 장애인 활동 지원이력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제외하려는 내용으로 김도읍의원이 대표발의한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및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안이 각각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음.

장애인 활동지원인력은 활동지원사를 제외하고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활동지원사의 경우 요양보호사 등의 자격이 있거나 활동지원사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자격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

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긴급전화센터의 장,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 또는 긴급전화센터·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8조의2(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긴급전화센터의 장, 상담소의 장,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밖에 긴급전화센터·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가 될 수 없다.	제8조의2(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 ① ---- ----- ----- ----- -----.
1. <u>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u>	1. <u>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u>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보호시설)¹⁸⁾은 가

18)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6(긴급전화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긴급전화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전화센터를 따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피해자의 신고접수 및 상담

2. 관련 기관·시설과의 연계

3. 피해자에 대한 긴급한 구조의 지원

4. 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인도받은 피해자 및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임시 보호

제6조(상담소의 업무) 상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정폭력을 신고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1의2. 가정폭력을 신고하거나 이에 관한 상담을 요청한 사람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2. 가정폭력으로 정상적인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그 밖에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등을 임시로 보호하거나 의료기관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로

정폭력 피해자에게 전문적인 보호·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안정과 인권 보호를 위해 상담, 의료·법률 지원, 자립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가정폭력 관련시설 종사자들은 가정폭력 신고나 상담, 피해자들의 폭력 피해사실 등 향후 재판 등에 활용되는 개인정보를 다루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기능 >

구 분		주 요 기 능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365일 24시간 위기개입 상담(초기지원), 긴급피난처 운영(7일 이내 긴급 보호), 지역관련 기관 연계(쉼터, 법률, 의료 등)
가정폭력 상담소	일반(통합)	가정폭력 피해자 대상 상담, 보호시설 및 의료기관 연계, 의료·법률지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가정폭력예방 및 홍보 등
	장애(통합)	
가정폭력 피해자 보 호시설	일반	가정폭력 피해자 대상 상담, 보호 및 숙식제공, 법률지원, 자립지원, 취업정보 제공 등 * 입소기간 : 단기 6개월(6개월 연장가능), 장기 2년 이내
	가족	10세 이상 남아를 동반한 피해자가 입소 가능한 보호시설

인도(引渡)하는 일

3. 행위자에 대한 고발 등 법률적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한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지방변호사회 및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 구조법인(이하 “법률구조법인”이라 한다) 등에 대한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4. 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인도받은 피해자등의 임시 보호

5.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가정폭력과 그 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제8조(보호시설의 업무) ① 보호시설은 피해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다만,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 구성원에게는 제1호 외의 업무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고, 장기보호시설은 피해자등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업무(주거편의를 제공하는 업무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숙식의 제공

2.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3. 질병치료와 건강관리(입소 후 1개월 이내의 건강검진을 포함한다)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4. 수사·재판과정에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 연계

5.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6.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7.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에 위탁된 사항

8. 그 밖에 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먼저, 사전검증으로서 직무수행능력에 대해 살펴보면, 현행법령¹⁹⁾은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의 자격기준으로, 관련 업무 종사 등 일정한 경력을 갖추 것과 교육훈련시설에서 상담원 교육과정을 이수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등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상담원 교육과정을 통하여 직무수행 능력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긴급전화센터·상담소·보호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 >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3]

긴급전화센터·상담소·보호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제9조 관련)

1. 일반기준

긴급전화센터·상담소·보호시설의 장 및 상담원은 제2호의 개별기준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법 제8조의3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에서 상담원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2. 개별기준

구분	자격기준
상담소·보호시설의 장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다음 각 목의 행위(이하 "가정폭력등"이라 한다)의 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가. 가정폭력 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성매매 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성폭력 라.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톱킹 마.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가정폭력등 방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가정폭력등 관련 상담원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가정폭력등 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또는 시설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외국인

19)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 ③ 그 밖에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의 자격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외국인 대상 상담소 및 외국인보호시설만 해당한다)
긴급전화 센터의 장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가정폭력등 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가정폭력등 방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가정폭력등 관련 시설 상담원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가정폭력등 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또는 시설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외국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전화센터만 해당한다)
상담소·보호시설에 근무하는 상담원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졸업자(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사람을 포함한다)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3.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가정폭력등 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단순노무자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이 있는 사람 4. 외국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외국인 대상 상담소 및 외국인보호시설만 해당한다) 5. 장애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장애인 대상 상담소 및 장애인보호시설만 해당한다)
긴급전화 센터에 근무하는 상담원	1. 가정폭력등 관련 시설 상담원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가정폭력등 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또는 시설에서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가정폭력등 방지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외국어에 능통하고 한국어 통역이 가능한 사람(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담원만 해당한다)

다음, 사후적인 보완장치를 보면, 법 제12조²⁰⁾에서는 상담소 또는

20)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인가의 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상담소·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설의 폐쇄, 업무의 폐지 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5조제5항, 제7조제4항 또는 제8조의3제4항에 따른 설치기준이나 운영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보호시설이 설치기준이나 운영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나 상담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등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담원 등이 정신적 제약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은 두지 않고 있음.

따라서 긴급전화센터의 장, 상담소의 장,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밖에 긴급전화센터·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의 업무는 신체적·정신적으로 취약한 내담자를 지원하는 특수한 업무에 해당하고, 폭력피해 사실 등 피해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별도의 직무수행 역량을 검증하거나 정신적 제약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 등을 마련하지 않고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제외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개정안에 대하여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안정과 인권보호 등 피해자 지원시설 업무는 고도의 정성적 판단을 요하는 업무이고, 시설 종사자는 이들과의 신뢰관계 형성이 조기 맞춤형 지원을 위한 중요 요소임을 감안할 때 가정폭력 피해자 입장에서 중

-
2. 제5조제5항, 제7조제4항, 제8조의2 또는 제8조의3제4항에 따른 상담원이나 강사의 수가 부족하거나 자격이 없는 자를 채용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4. 제15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상담소·보호시설 또는 교육 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

사자 자격기준이 고려되어야 하고, 폭력피해 사실 등 피해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등 업무의 공익적 관련성이 높아 현행의 결격사유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임.

관련 단체인 여성긴급전화 1366협의회는 긴급전화센터는 일반인 대상이 아닌 심리·정서적으로 취약한 내담자를 지원하는 특수한 업무이며, 우울증, 불안장애, 조울증, 조현병 등 정서 및 정신건강을 동반한 복합 피해자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오히려 상담원 자격기준이나 전문성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고, 전국성폭력피해보호시설협의회는 가정폭력피해자의 지원은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도출할 수 있는 가장 최전선의 종사자이므로 결격사유를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결혼중개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결혼중개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제6조(결격사유) ----- ----- ----- -.
1. <u>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u>	1. <u>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u>
2. ~ 7. (생략)	2. ~ 7. (현행과 같음)

결혼중개업은 수수료·회비, 그 밖의 금품을 받고 결혼을 위한 상담 및 알선 등의 행위를 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결혼중개업과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결혼중개업으로 구분되며, 결혼중개업자는 제3조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를 말함.

먼저, 결혼중개업 운영자와 관련, 사전검증으로서 결혼중개업 운영자의 직무수행능력에 대해 살펴보면, 현행법 제3조제1항21)은 국내결혼

21)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 ① 국내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보험금 및 중개사무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개업을 하고자 할 경우 보증보험금 및 중개사무소 등의 기준을 갖추어 신고하도록 하고, 제4조제1항²²⁾은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할 경우 교육 이수, 자본금 요건, 보증보험 가입 등의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신고 및 등록의 기준이 결혼중개업 운영자의 직무수행능력을 검증하는 기준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또한, 사후적인 보완 장치를 보면, 현행법 제18조²³⁾는 결혼중개업의

제1조의2(국내결혼중개업 신고기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전단에서 “보증보험금 및 중개사무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5조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2. 건축물대장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표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내 근린생활시설 또는 같은 표 제14호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로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 이 경우 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22)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 ①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24조에 따른 교육을 받고 제24조의3에 따른 자본금 요건 및 보증보험금, 중개사무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조(국제결혼중개업 등록기준) 법 제4조제1항 전단에서 “보증보험금, 중개사무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4조에 따른 교육을 받을 것

1의2. 법 제24조의3에 따른 자본금 요건을 갖출 것

2. 법 제25조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3. 건축물대장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표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내 근린생활시설 또는 같은 표 제14호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로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 이 경우 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23)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영업정지 등) 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결혼중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국내결혼중개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거나 1년 이내에 3회 이상 제24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여야 하며,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제1호·제2호·제23호 또는 제24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결혼중개업을 신고하거나 등록한 경우

2.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제6조제6호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 1개월 이내에 결격사유가 있는 임원을 개입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7조를 위반하여 직업소개사업, 근로자파견사업 또는 해외이주알선업을 겸업한 경우

4. 제9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결혼중개업을 하게 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국내결혼중개업자의 영업소 폐쇄를 명하도록 하고, 국제결혼중개업자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피한정후견인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영업소 폐쇄나 등록이 취소된다면 후견이 필요함에도 후견개시를 주저함으로써 오히려 부적절한 직무수행이 발생할 소지도 있다고 봄.

다만, 결혼중개업자는 해당 서비스 이용자의 신상정보를 취급한다는 점²⁴⁾, 결혼중개업의 특성상 부적절하게 운영될 경우 해당 서비스 이용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5.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계약서의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계약서를 내주지 아니한 경우
7.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8.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계약서를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9.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상정보(증빙서류를 포함한다)를 이용자와 상대방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상정보가 거짓임을 알면서도 이를 제공하여 중개한 경우
11.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과장된 개인신상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 사항을 누락한 경우
12.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제1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통역·번역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13. 제10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기록물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4. 제10조의5를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의 모집·알선 행위나 부당한 금품 징수행위를 한 경우
15. 제11조제2항에 따라 외국 현지 형사법령 또는 행정법령을 위반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된 경우(제2호에 대하여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6.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또는 과장되거나 국가·인종·성별·연령·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또는 인신매매나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광고한 경우
17.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
18. 제12조의2를 위반하여 결혼중개 행위를 한 경우
19. 제13조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결혼중개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0.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21.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조사나 검사를 기피하거나 방해한 경우
22. 제17조에 따른 시정 명령을 위반한 경우
23. 제24조의3에 따른 등록기준에 못 미치게 된 경우
24. 제25조를 위반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24)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신상정보 제공) ①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이하 “상대방”이라 한다)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증빙서류를 포함한다)를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 또는 상대방이 외국에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경우 「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공증담당영사로부터 확인을 받거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확인을 받아야 한다.

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별도의 직무수행 역량을 검증하거나 정신적 제약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를 폐쇄하는 등 제한하는 규정 등을 마련하지 않고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제외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다음, 결혼중개업 종사자의 경우 별도의 자격기준 등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직무수행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사전·사후 장치가 없는바, 별도의 직무수행 역량을 검증하거나 정신적 제약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 등을 마련하지 않고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제외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1. 혼인경력

2. 건강상태(후천성면역결핍증, 성병 감염 및 정신질환 여부를 포함한다)

3. 직업

4.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매매 알선 및 강요 관련 범죄경력과 최근 10년 이내의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

5. 그 밖에 상대국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건강상태에 관한 서류는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병원급 의료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정신건강의학과가 설치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의 경우 정신계통의 검사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협조를 얻어 실시하여야 한다)를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는 그 정보를 제공받는 이용자와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의 제공 시기 및 절차, 입증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4(기록보존) ① 결혼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록을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결혼중개계약서

2. 제10조의2에 따라 작성된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 확인서(상대방 언어 번역본 포함) 및 관련 증빙서류

3. 그 밖의 혼인 관련 서류

② 결혼중개업자는 이용자나 상대방이 제1항에 따른 기록의 열람·사본교부 등 그 내용확인을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안에 대하여 여성가족부는 결혼중개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하려는 피한정후견인의 사전 직무수행능력 검증수단이 미미하다는 점, 사업 전 과정에 걸쳐 전문성, 공익성 등이 요구되는 결혼중개업 특성상 운영이 부적절하게 이루어질 경우 그 이용자의 삶과 재산에 미치는 피해가 중대하며 비가역적인 점을 고려하여 현행 수준의 결격사유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의 장, 상담원 또는 그 밖의 종사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 정후견인을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19조(상담원 등의 자격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장, 상담원 또는 그 밖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1. <u>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u> 2. ~ 4. (생략) ② (생략)	제19조(상담원 등의 자격기준) ① --- ----- ----- ----- 1. <u>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u> 2.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²⁵⁾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전문적인 보호·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

2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상담소의 업무) 상담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성폭력피해의 신고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2. 성폭력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또는 사회생활이 곤란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과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의 연계
3. 피해자등의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의료 지원
4.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 등예의 동행
5. 성폭력행위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 등 사법처리 절차에 관하여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 및 지원 요청
6. 성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7. 그 밖에 성폭력 및 성폭력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제13조(보호시설의 업무 등) ① 보호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개정 2011. 3. 30.>

1. 피해자등의 보호 및 숙식 제공
2. 피해자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설로, 동 시설의 종사자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보호, 법률·의료지원 연계 등을 비롯하여 피해자에 대한 생계비 등 보호비용 지원, 행정업무 처리까지 전문적인 보호·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기능 >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성폭력피해자 대상 상담, 보호시설 및 의료기관 연계, 의료·법률지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성폭력예방 및 홍보 등	성폭력피해자 대상 상담, 보호 및 숙식제공, 의료·법률지원, 학업·자립지원, 취학·진학 및 취업프로그램 지원 등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및 그 가족 대상 상담, 의료, 수사·법률, 심리치료 서비스 제공

먼저, 사전검증으로서 직무수행능력에 대해 살펴보면, 현행법 제19조 제2항26)에 따른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보면, 간호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임상심리전문가 등을 제외하면 관련 업무 종사 등 일정한 경력을 갖출 것과 교육훈련시설에서 상담원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상담원 교육과정을 통하여 직무수행 능력을 판단할 수 있을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3. 자립·자활 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4. 제11조제3호·제4호 및 제5호의 업무
5.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에 위탁된 업무
6. 그 밖에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18조(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 피해상담, 치료,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에 법률상담등 연계, 수사지원, 그 밖에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2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상담원 등의 자격기준) ②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에서 종사하려는 사람은 전문 지식이나 경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종사자의 자격기준 >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종사자의 자격기준(제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종사자는 제2호의 해당 개별기준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춘 사람으로 한다.

나. 상담소·보호시설의 장 및 상담원과 통합지원센터의 상담원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상담원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2. 개별기준

구분		자격기준
가. 상담소·보호시설의 장		1)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성폭력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 공무원으로 성폭력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상담원의 자격을 취득한 후 성폭력 방지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기관 또는 시설(이하 이 표에서 “성폭력방지 관련 기관”이라 한다)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상담소·보호시설의 상담원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2)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으로 성폭력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공무원으로 성폭력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임직원으로 2년 이상 상담 및 보호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원의 경우만 해당한다)
다. 통합지원센터에 근무	1) 소장	가)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산부인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진료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부소장	가) 사회복지학, 상담학, 심리학, 아동학, 여성학 등의 분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사회복지학, 상담학, 심리학, 아동학, 여성학 등의 분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산부인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진료한

하 는 중 사 자		경력이 있는 사람 라)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료법」 제7조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 대학을 졸업한 사람: 4년 (2) 3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5년 (3) 2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6년
	3)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 임상심리 전문가	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국민의 심리적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학회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학회에서 시행하는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심리 치료사	가) 사회복지학, 상담학, 심리학, 아동학, 여성학 등의 분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병원 또는 성폭력방지 관련 기관에서 1년 이상 심리치료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사회복지학, 상담학, 심리학, 아동학, 여성학 등의 분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병원 또는 성폭력방지 관련 기관에서 3년 이상 심리치료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간호사	가) 간호학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의료법」 제7조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간호학 전문학사학위 소지자로서 「의료법」 제7조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상담원	가) 사회복지학, 상담학, 심리학, 아동학, 여성학 등의 분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1년 이상 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학사학위 취득 후 석사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나) 사회복지학, 상담학, 심리학, 아동학, 여성학 등의 분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비고: 제2호의 개별기준 외에 통합지원센터에 근무하는 행정지원 인력 등 종사자에게 필요한 자격기준을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다음, 사후적인 보완장치를 보면, 현행법 제22조²⁷⁾에 따르면, 지자체

27)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시정 명령)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5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재발방지대책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10조제4항 또는 제12조제5항에 따른 설치·운영 기준 및 종사자의 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상담원 등이 제19조에 따른 자격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19조의2제5항에 따른 설치·지정 기준 또는 운영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강사의 수가 부족

장은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상담원 등이 제19조에 따른 자격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즉,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상담원 등이 피한정후견인이 된 경우 등에는 일정 기간 동안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제23조²⁸⁾에 따르면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업무의 폐지 또는 정지를 명하거나 인가를 취소할 수 있음. 피한정후견인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시정명령을 받고, 업무 폐지 또는 정지, 인가 취소에 이른다면, 후견이 필요함에도 후견개시를 주저함으로써 오히려 부적절한 직무수행이 발생할 소지도 있다고 봄.

다만,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보호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피해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판단은 물론 적절한 대응이 상시 요구되는 등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의 장과 상담원 등이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을 고려할 때 별도의 직무수행 역량을 검증하거나 정신적 제약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 등을 마련하지 않고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제외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한 경우 또는 자격이 없는 사람을 채용한 경우

4.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휴지기간을 초과하여 운영을 재개하지 아니한 경우

28)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인가의 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폐지 또는 정지를 명하거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22조제2항에 따른 시정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제29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개정안에 대하여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심리치료 등 전문적인 보호·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독자적인 판단 능력과 사무처리 능력이 요구되는 종사자들의 역할을 고려할 때, 피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에서 제외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마.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스톱킹 피해자 지원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10조(종사자 등의 자격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될 수 없다. 1. <u>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u> 2. ~ 4. (생략) ② (생략)	제10조(종사자 등의 자격기준) ① -- ----- ----- -----. 1. <u>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u> 2.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은 스톱킹 피해자에게 보호·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현행법 제9조29)에 따라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안정과 인권 보호를 위해 상담, 의료·법률 지원, 자립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원시설 종사자는 스톱킹 신고나 상담, 수사·재판

29)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지원시설의 업무) 지원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스톱킹 신고 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2. 피해자등의 신체적·정신적 안정과 일상생활 복귀 지원
3. 피해자등의 보호와 임시거소의 제공 및 숙식 제공
4. 직업훈련 및 취업정보의 제공
5. 피해자등의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의 의료 지원
6. 스톱킹행위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 등 사법처리 절차에 관하여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및 지원 요청
7. 수사·재판 과정에 필요한 지원
8. 스톱킹의 예방·방지를 위한 홍보 및 교육
9. 스톱킹과 스톱킹 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10.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시설에 위탁된 업무
11. 그 밖에 피해자등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과정에 필요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³⁰⁾

< 2023년 스톡킹 피해자 지원 시범사업 추진 현황 >

- (긴급주거지원) 피해자 긴급 보호를 위해 원룸·오피스텔 등 임시숙소 지원(30일 이내, 연장 가능)
- (임대주택주거지원) LH 임대주택을 활용한 주거 공간 제공(3~6개월, 연장 가능)
- (치료회복프로그램) 심신·정서 회복을 위한 단계별 심리 지원

사업명	기관수	선정 지자체(기관 수)
긴급주거지원	6개소	서울, 부산, 인천, 충남, 전남, 경남
임대주택 주거지원	4개소	부산, 대전, 강원, 전남
치료회복 프로그램	16개소	서울(2), 부산(2), 대구, 인천,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먼저, 사전검증으로서 직무수행능력에 대해 살펴보면, 현행법 제10조 제2항³¹⁾에 따른 지원시설 종사자 등의 자격기준을 보면, 사회복지사를 제외하면 관련 업무 종사 등 일정한 경력을 갖출 것과 교육 전문기관이 개설·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교육과정을 통하여 직무수행 능력을 판단할 수 있을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30) 스톡킹 피해자 지원의 경우 기존 1366센터,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등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에서 주거 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음('23년~)

31)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종사자 등의 자격기준) ② 지원시설에서 종사하려는 사람은 전문 지식이나 경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지원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 >

■ 스톡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지원시설 종사자 등의 자격기준(제8조 관련)

구분	자격기준
1. 지원시설의 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교육 전문기관이 개설·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스톡킹·가정폭력·성폭력 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7급 이상 공무원으로 스톡킹·가정폭력·성폭력 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상담원의 자격기준을 갖춘 후 스톡킹·가정폭력·성폭력 방지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기관 또는 시설에서 3년 이상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상담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교육 전문기관이 개설·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으로 스톡킹·가정폭력·성폭력 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스톡킹·가정폭력·성폭력 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스톡킹·가정폭력·성폭력 방지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기관 또는 시설에서 3년 이상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비고

1. 위 표에서 "교육과정"이란 다음 표의 교육과정을 말한다.

교육과정	이수시간
가. 스톡킹에 대한 이해 나. 스톡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의 이해 다. 스톡킹 관련 법령 및 정책·제도에 대한 이해	20

2. 위 표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란 제1호 각 목 또는 제2호 각 목의 자격기준을 갖추기 전이나 후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다음,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직무수행능력이 결여된 경우 이들의 관리에 대한 사후적인 보완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따라서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는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안정과 인권 보호를 위해 상담, 의료·법률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별도의 직무수행 역량을 검증하거나 정신적 제약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 등을 마련하지 않고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제외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개정안에 대하여 여성가족부는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는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안정과 인권 보호를 위해 상담, 의료·법률 지원 등 고도의 정성적 판단을 요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정신적 제약이 있는 경우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자격요건에 ‘피한정후견인’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바.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아이돌보미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다. 1. <u>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u> 2. ~ 9. (생략)	제6조(결격사유) ----- ----- ----- 1. <u>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u> 2. ~ 9. (현행과 같음)

아이돌보미는 서비스제공기관에 채용되어 이용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만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먼저, 사전검증으로서 아이돌보미의 직무수행능력에 대해 살펴보면, 현행법 제7조³²⁾에 따르면 아이돌보미가 되려는 사람은 교육기관에서

32) 「아이돌봄 지원법」

제7조(아이돌보미의 자격) ① 아이돌보미가 되려는 사람은 제9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인권과 아동학대 예방 교육
2. 아동의 안전관리 교육
3. 성희롱 예방 교육
4. 아이돌보미의 인성함양
5. 장애아동에 대한 이해와 인식 개선 교육
6.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아이돌보미가 되려는 사람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적성·인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검사를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아이돌보미의 교육과정 및 제3항에 따른 적성·인성 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일정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적성·인성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과정이나 적성·인성 검사 과정에서 직무수행능력과 관련한 사전검증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다음, 사후적인 보완 장치를 보면, 현행법 제32조³³⁾는 아이돌보미가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아이 또는 보호자에게 신체상 또는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제2조(아이돌보미의 자격)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자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말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2.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3.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4.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33) 「아이돌봄 지원법」

제32조(아이돌보미 자격정지) 여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보미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을 정지시켜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가. 아이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나. 아이를 모욕하거나 헐뜯는 행위
 - 다. 아이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는 행위
 - 라. 아이의 주거지에서 행한 절도 등 불법행위
 - 마.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장소에서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유해약물을 이용하는 행위
2. 아이돌보미가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아이 또는 보호자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3. 제10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보호자에게 불필요한 서비스를 알선·유인하거나 이를 조장한 경우

제33조(아이돌보미 자격취소) 여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보미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아이돌보미가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아이 또는 보호자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아동복지법」 제17조의 금지행위를 하여 같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 3의2.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 3의3.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
4. 제32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5. 제32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자격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제32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기간에 아이돌보미로 활동한 경우
7. 제6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자격을 정지시키도록 하고,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신적 제약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자격을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규정은 두지 않고 있음.

아이돌보미³⁴⁾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고, 아이에게 질병·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에의 이송, 안전하고 균형있는 영양의 급식 및 간식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므로, 아이돌보미 직무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정신적 제약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자격을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규정 등을 마련하지 않고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제외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34)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아이돌보미”란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육아도우미”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지 않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아이돌보미의 직무 및 책무) ① 아이돌보미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아이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아이돌보미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아이에게 질병·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에의 이송
2. 안전하고 균형있는 영양의 급식 및 간식 제공
3. 아이의 청결과 위생의 유지
4.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아이돌보미는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아이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아이돌보미는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아이의 생명·안전 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⑤ 아이돌보미는 보호자의 육아 방침을 존중하여야 하며, 응급조치 등과 관련하여 보호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안에 대하여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는 일대일로 아동을 돌보는 재가 돌봄서비스로 아이돌보미 업무 특성상 아동의 안전과 보호 업무가 주된 업무인 점을 감안하여 아이돌보미 자격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요구되므로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사.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청소년지도사의 결격사유 준용³⁵⁾)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제4항제1호).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청소년지도사) ① ~ ③ (생략)	제21조(청소년지도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소년지도사가 될 수 없다.	④ ----- ----- -----.
1. <u>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u>	1. <u>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u>
2. ~ 5. (생략)	2. ~ 5. (현행과 같음)
⑤ ~ ⑦ (생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현행법 제21조³⁶⁾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수련시설 등에 배치

35)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청소년상담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의 자격검정, 연수 및 결격사유 등에 관하여는 제21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을 준용한다.

36)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청소년지도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청소년지도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의 연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소년지도사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되어 청소년 수련활동 및 교류활동 등의 지도 업무를 수행하고, 동법 제22조³⁷⁾에 따른 청소년상담사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에 배치되어 청소년의 위기상황에 대한 진단 및 상담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함.

<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자격 기준 >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별표 1]	
등급	응시자격 기준
1급 청소년지도사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급 청소년지도사	1. 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2.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별표 1의2에 따른 과목을 이수한 사람 3. 대학원의 학위과정 수료(예정)자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4.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4의2.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의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⑤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응시할 수 없다.

⑥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검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단체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의 등급, 자격검정, 연수 및 자격증 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7)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청소년상담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의 자격검정, 연수 및 결격사유 등에 관하여는 제21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을 준용한다.

	서 별표 1의2에 따른 과목 중 필수영역 과목을 이수한 사람 5. 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6.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7.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8.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
3급 청소년지도사	1.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2.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전문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별표 1의2에 따른 과목을 이수한 사람 3.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비고

1.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의 인정 범위와 내용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2.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대학원에서 1급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을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는 각각 2년 또는 3년의 경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다.
3. 제18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자 연수 등 청소년육성 관련 연수 또는 교육을 받은 경우 그 내용에 따라 점수로 환산하여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수 및 교육을 받은 사람의 경력환산 점수는 여성가족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4. 고등학교, 대학, 전문대학 및 대학원이란 각각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4호에 따른 대학·전문대학,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을 말한다.

＜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과목 및 방법 ＞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별표 2]			
구분	검정 과목	검정 방법	
1급	청소년연구방법론, 청소년 인권과 참여, 청소년정책론, 청소년기관 운영, 청소년지도자론	주관식 · 객관식 필기시험	
2급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문화,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청소년문제와 보호	객관식 필기시험	면접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는 면접 시험 면제)
3급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활동, 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문화,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문제와 보호,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객관식 필기시험	면접

비고: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과목과 관련된 전공과목의 인정 범위는 여성가족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자격 기준 ＞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별표 3]	
등급	응시자격 기준
1급 청소년상담사	1. 대학원에서 청소년(지도)학 · 교육학 · 심리학 · 사회사업(복지)학 · 정신의학 · 아동(복지)학 · 상담학 분야 또는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대학원에서 상담관련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3. 2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급 청소년상담사	1. 대학원에서 상담관련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3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3급 청소년상담사	1.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상담관련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분야 전문학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5.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담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

비고

1. 상담 실무경력의 인정 범위와 내용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2. 고등학교, 대학, 전문대학 및 대학원은 별표 1의 비고 제4호와 같다.
3. 응시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자격검정 공고에서 정하는 서류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의 과목 및 방법 >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별표 4]				
등급	검정과목		검정방법	
	구분	과목		
1급 청소년상담사	필수	○ 상담사 교육 및 사례지도 ○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 상담연구방법론의 실제	필기 시험	면 접
	선택	비행상담 · 성상담 · 약물상담 · 위기상담 중 2과목		
2급 청소년상담사	필수	○ 청소년 상담의 이론과 실제 ○ 상담연구방법론의 기초 ○ 심리측정 평가의 활용 ○ 이상심리	필기 시험	면 접
	선택	진로상담 · 집단상담 · 가족상담 · 학업상담 중 2과목		
3급 청소년상담사	필수	○ 발달심리 ○ 집단상담의 기초	필기 시험	면 접

		○ 심리측정 및 평가 ○ 상담이론 ○ 학습이론		
	선택	청소년이해론·청소년수련활동론 중 1과목		

비고: “청소년 관련 법”이란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활동진흥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소년법」을 말하며, 그 밖의 법령을 포함하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다.

먼저,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직무수행능력 사전검증 수단을 살펴보면, 현행법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 및 시행령 제20조·제23조³⁸⁾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각 연수기관에서 연수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이들의 자격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격검정 과정에서 직무수

38)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0조(청소년지도사의 자격검정)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조에 따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내용과 수탁기관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자격 기준과 자격검정의 과목 및 방법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④ 별표 1의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자격 기준에서 2급 청소년지도사의 응시자격 기준 제1호 및 제3호와 3급 청소년지도사의 응시자격 기준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등급의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소년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검정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청소년상담사의 자격검정)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내용과 수탁기관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자격 기준과 자격검정의 과목 및 방법은 각각 별표 3 및 별표 4와 같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소년상담사의 등급별 자격검정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행능력에 대한 사전검증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음.

다음, 사후적인 보완장치를 보면, 현행법 제21조의²³⁹⁾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등에 청문을 통해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피한정후견인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자격이 취소된다면, 후견이 필요함에도 후견개시를 주저함으로써 오히려 부적절한 직무수행이 발생할 소지도 있다고 봄.

다만, 청소년 수련활동 등의 지도와 청소년의 위기상황에 대한 진단 및 상담 등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업무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정신적 제약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자격을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제외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개정안에 대하여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상담 및 활동 등을 지원·담당하는 청소년지도자(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의 업무는 물리적인 업무절차 외에 심층적인 상담, 프로그램 개발 등 직관적 통찰을 기반으로 하는 정성적 판단을 요하고 있으므로 정신적 제약이 있는 경우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자격요건에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을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39)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의2(청소년지도사 자격의 취소)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21조제4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3.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경우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아.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청소년수련시설의 대표자 또는 운영대표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1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련시설의 대표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 또는 운영대표자가 될 수 없다.	제15조(결격사유) ----- ----- ----- ----- ---
1. <u>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u>	1. <u>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u>
2. ~ 6. (생략)	2. ~ 6. (현행과 같음)

현행법 제2조제2호40)는 청소년활동시설을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교류활동, 청소년문화활동 등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으며, 동법 제10조41)는 청소년활동시설을 청소년수련시설 및 청

40)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교류활동, 청소년문화활동 등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로서 제10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1)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수련시설
 - 가. 청소년수련관: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 나. 청소년수련원: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 다. 청소년문화의 집: 간단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수련시설
 - 라.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의 직업체험, 문화예술, 과학정보, 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
 - 마. 청소년야영장: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청소년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

소년이용시설로 구분하고 있음.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야영장 등으로 분류됨.

현행법 제11조제3항⁴²⁾은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소관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2조⁴³⁾ 및 제13조⁴⁴⁾는 청소년수련시설의 허가 요건 및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려는 자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 제14조⁴⁵⁾는 수련시설 설치·운영자 또는 위탁운영단체

바. 유스호스텔: 청소년의 숙박 및 체류에 적합한 시설·설비와 부대·편익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 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청소년수련활동 지원은 제11조에 따라 허가된 시설·설비의 범위에 한정한다)을 기능으로 하는 시설

2. 청소년이용시설: 수련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그 설치 목적의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

42)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운영 등) ③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규도의 부지 변경, 건축 연면적의 증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수련시설 설치·운영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43) **제12조(수련시설의 허가 요건)** ① 제11조제3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제17조·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시설기준·안전기준 및 운영기준에 적합할 것
2. 해당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있을 것
3. 해당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것
4.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제3항에 따라 수련시설을 허가할 때 그 시설이 제1항에 따른 허가 요건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44)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3조(수련시설의 등록) ① 수련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이를 운영하기 전에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삭제 <2007. 7. 27.>

③ 제1항에 따른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5)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4조(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 ① 수련시설 설치·운영자 또는 제16조에 따른 위탁운영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그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련시설에 대해서는 운영대표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이하 “수련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그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청소년수련시설의 대표자(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는 청소년수련시설의 건립 및 운영에 필요한 허가·등록을 받고 운영대표자 및 위탁운영단체를 선임·선정하는 역할을 하며, 수련시설의 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총괄하는 역할은 운영대표자가 수행하고 있음.

먼저, 사전검증으로서 직무수행능력에 대해 살펴보면, 수련시설 대표자의 경우 현행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련설치 전에 시설기준·안전기준·운영기준 및 자금조달능력 등의 요건을 갖추 소관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현행법 시행령 제7조46) 및 시행규칙 제5조47)에 따

시설의 대표자”라 한다) 또는 제16조에 따른 위탁운영단체의 대표자가 제1항에 따른 운영대표자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운영대표자가 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영대표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46)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7조(수련시설의 등록) ① 법 제13조에 따라 수련시설을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된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그 내용을 등록대장에 기록한 후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교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등록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47)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등록신청서류 등) ①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등록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르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6호의 서류는 제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와 그 내용이 같은 경우에는 이를 생략한다.

1. 별지 제9호서식의 청소년수련시설 시설별일람표
2. 운영계획서
3.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4. 청소년지도사 명단 및 자격증 사본
5. 해당 수련시설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았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허가서 등의 사본
6.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운영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8. 삭제 <2020. 6. 12.>
9.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5항 전단에 따른 완성검사증

라 수련시설을 운영하기 전에 등록신청서에 운영계획서, 시설배치도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허가·등록의 기준이 수련시설 대표자 개인의 직무수행능력을 검증하는 기준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다음, 운영대표자의 경우는 현행법 시행령 제8조48)에서 청소년지도사 및 정교사 자격증 소지, 일정 기간 이상 청소년육성업무 종사 경력 등의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선임 과정에서 수련시설 운영대표자의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사전검증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는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명서(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10항제1호에 따른 완성검사 증명서(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③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청소년수련시설 변경등록 신청서에 변경사항과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8)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8조(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의 자격) ①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1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2.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중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청소년육성업무에 8년 이상 종사한 사람
6.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청소년육성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7. 제6호 외의 공무원 중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② 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에 관하여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자는 직접 또는 청소년단체에 운영을 위탁하여 그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를 따로 선임해야 하는데,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운영대표자로 선임하도록 하고,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경우 위탁계약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운영대표자의 선임 및 위탁운영단체 선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

다음, 사후적인 보완 장치를 보면, 현행법 제20조의2⁴⁹⁾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 또는 청소년활동 중에 시설 안전 확보가 현저히 미흡하거나 시설 이용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관 지자체장이 시설 운영 또는 활동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2조⁵⁰⁾는 수련시설의 종합평가

49)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0조의2(운영 중지 명령)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련시설의 운영 또는 청소년활동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련시설 설치·운영자 또는 위탁운영단체,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주최자에게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 운영 또는 활동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시설이 붕괴되거나 붕괴할 우려가 있는 등 안전 확보가 현저히 미흡한 경우
2.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의 실시 중 참가자 또는 이용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및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경우
4. 「아동복지법」 제17조의 금지행위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자세한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여성이 족부령으로 정한다.

50)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2조(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련시설 설치·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련시설의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경우
2. 최근 2년 이내에 제72조제2항제8호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다시 같은 호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련시설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그 수련시설의 설치 착수 또는 운영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기간에 수련시설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0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제19조의2에 따른 종합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은 경우

에서 최하등급을 연속 3회 이상 받은 경우 등에 해당하면 소관 지자체장이 그 수련시설의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청소년수련시설의 대표자나 운영대표자가 정신적 제약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운영대표자의 업무수행을 제한하는 규정은 두지 않고 있음.

따라서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체계적인 수련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대표자 및 위탁운영단체를 선임·선정해야 하는 청소년수련시설 대표자로서의 역할에 대해서는 검증 및 보완 방안이 미비하다는 점, 청소년수련시설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한 운영대표자 역할의 전문성 및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신적 제약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수행을 제한하는 규정 등을 마련하지 않고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제외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참고로, 현행법 제16조제4항은 위탁운영단체 및 그 대표자와 임원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안에 따라 위탁운영단체 및 그 대표자와 임원의 결격사유에서도 피한정후견인이 제외되는 효과가 발생함.

현행법 제8조제2항⁵¹⁾ 및 제16조제1항⁵²⁾에 따르면 위탁운영단체는

51)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8조(청소년활동 정보의 제공 등) ② 활동진흥원과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 청소년의 활동 요구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그 지역의 청소년활동시설과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이하 “청소년단체”라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⁵³⁾에 따른 청소년단체이고,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제4항제1호⁵⁴⁾ 및 제28조의2제2항제1호⁵⁵⁾에 따라 피한정 후견인은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단체의 임원이 될 수 없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 여성가족부는 수련시설 대표자는 사전·사후 직무수행능력 검증수단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과정에서 후견인의 동의 없는 건립공사 계약 등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후견인이 취소할 경우 신뢰 보호 및 시설운영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고,

수련시설 운영대표자는 수련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과정에서 후견인의 동의 없는 학교나 단체 등과의 수련활동 계약, 개보수 공사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후견인이 취소할 경우 신뢰 보호 및 시설의 안정적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수련시설 대표자 및 운영대표자의 결격

한다)에 제공하여야 한다.

52)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53) 「청소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7.(생략)

8.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4) 「청소년기본법」

제21조(청소년지도사) ① ~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소년지도사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55) 「청소년기본법」

제28조의2(청소년단체 임원의 결격사유) ① 청소년단체의 임원은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은 법인의 임원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자, 관리인 또는 그 밖에 회칙으로 정한 임원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소년단체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제21조제4항 각 호(제4호의2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644, 5645, 5649